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트면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인 근로기준법 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회에서 보수를 받은 사람은 담임목사와 전도사(1명)뿐이고 신학생 4명은 선교활동비 명목으로 연30만원의 학비보조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는 원고들과 전도사 1명 등 3명만 인정된다"며 "이 교회는 부당해고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32-3)

Q 근로자 5인미만 교회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박씨 부부는 2002년 7월부터 교회 관리직사로 일하다 2003년 4월 해고됐으며 경복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교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선교활동비를 받는 신학생을 포함해 교회 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005년 1월 27일 "교회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한 포천시 K교회 관리직사 박모(57)씨 부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10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1조에 따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脾之聲歌(비의 소리는 노래이다)-평소 노래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여유있게 즐기고 음악을 즐기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 지는 것을 아끼므로 웬지 모른 공허함에 불필요한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⑤ 脾之臭香(비의 냄새는 향내이다): 평소 아로마 목욕이나 마사지를 즐긴다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및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⑥ 飲食勞傷(음식과 지나친 안일은 脾를 상하게 한다): 음식과 지나친 휴식, 안일이 비명의 근원이나 항상 조심하여 음식을 가려먹고 적당히 몸을 움직여 줘야 합니다.

⑦ 火生土, 水克土(화는 토를 기르고, 수는 토를 이긴다)-脾는 오행(五行)상 토에 배속되는데 화열(火熱)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극적이거나 뜨거운 음식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조증, 화병 및 분노를 조심하지 않으면 식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30분 마다 1/4cup) 마시면 脾의 기운이 안정되므로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 식욕이 조절됩니다.

☞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jhanberg.co.kr

한방적으로 접근해본 다이어트②

한방에서 調脾(비를 조절, 고르게 함) 하는 방법은 각 체질에 맞는 약물요법, 행동수정요법, 해독요법, 물리치료요법 및 침구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脾의 기능을 저해하였던 각종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정신적 문제, 각 장부의 불균형 상태 및 독소가 제거되면서 몸의 세포기능과 활력을 회복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면역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각 장기의 기능(本)이 개선되어 몸이 건강해지는데 피부 트러블이 줄고 탄력(表)도 되살아나 表本(지엽적인 현상과 근본원인)치료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며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기의 흐름이 원활해져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조비(調脾)'에 대한 수칙을 한의학의 고전서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인용하면: ① 脾惡濕(비는 습한 것을 싫어하며 마른 것을 좋아한다)-비에 습열이 쌓이게 하여 부담을 주는 축축한 음식에 속하는 기름지고 단 음식 혹은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② 脾主四肢(비는 사지말단을 주관한다)-팔다리에 쥐가 자주나거나 힘이 없다면 소화기계와 영양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영양분을 잘 흡수하여 팔다리카지 영양이 고르게 퍼지고 흐르게 합니다.

③ 脾之志思(비의 뜻은 생각이다)-지나친 생각과 염려는 비를 상하게 합니다. 평소 긍정적이고 단순한 사고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강진욱



포도막염 등과 같이 눈에 심각한 합병증 및 후유증을 초래하는 질환도 유행성 결막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행성 결막염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도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안과외과의 진찰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음식이나 밤을 새우는 것같이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크게 불편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생활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소금물로 씻거나 하는 것은 해로우며 찬 수건 혹은 얼음수건으로 잠시 냉찜질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 포천의료원 (031-539-9114)

경과에 따라 염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내복약과 안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개 처음 1주일간은 집중적인 치료를 요한다. 현재까지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特效약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주된 치료이다.

2차적인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심할

때는 냉찜질, 혈관수축제, 소염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결막에 심한 상처가 남거나 안구와 눈꺼풀이 들어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자는 3~4주 이내에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된다.

세균, 곰팡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에 의한 결막염 또는 각막염이나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간접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관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치료비가 불가피 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관망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92. 5. 22.91다41880). 그러므로 귀하는 추가의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1992. 5. 22.91다41880).

☞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52)

Q 저는 3년 전 甲회사소속 영업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철길간널목 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우관절후방탈구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 후유증인 우측대퇴골두무혈중괴사증이 발견되어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662조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

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이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11. 11. 97다36521), 자동차운송사고피해자 구제법 제11조,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8. 94다47094).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관례는 손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계를 많이 한다고 테크닉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테크닉을 많이 알고 있다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없고 설명 테크닉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열려있을 성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입니다. 물론 서로 처음 하신다면 서로 서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둘만의 독창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으신다면 처음이라도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괜히 배운다고 하다가 성에 대한 혐오감 또는 죄책감만 생겨 정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같이 성관계를 하느냐 배워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 습니다.

☞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성관계의 호기심에 대해서

Q 결혼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많이 해서 테크닉을 익혀 배우자를 좋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혼 전까지 성관계 한번도 안하고 처음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가져서 순수한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처음이라는 데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싫어하지 않을까요?

A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 라면 아니 결혼을 하셔도 이런 고

민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테크닉을 많이 알아야 상대를 즐겁게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모르면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을까?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노 같은 음란물을 보기도 하고, 성을 사기도 하면서 성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욕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물적 본능일 뿐입니다. 또한 성관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귀사와 같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서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면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6.14자로 법인세할증주세 신고납부요령을 정하여 종전방식대로 수기납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한 경우에도 수기납부서에 주진세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Q 저희 법인은 2004년도분 법인세할증주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수기납부서에 의하여 은행에 주진세만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주진세(법인세할)신고서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세법을 검토하던 중 주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가산세를 피할 수는 없는지요?

A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4년 귀속분부터 주진세의 신고납부무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법에서 신고의무와 납부무무를 각각 이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할 주진세의 경우 법 개정전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납부 미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고 미납부서에 납부지연일에 10,000분의 3을 곱하여 납부불성실

“고객은 가슴으로, 안전은 지식으로”

산업재해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신고하나?

- 사망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 신고하여야 하나?

-산재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산재보상을 위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2가지중 한가지만 하면 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종전의 1회에서 금년부터 4회로 늘렸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달 (3월, 6월, 9월, 12월)의 1일~7일 사이입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미신고로 인한 사법처리가 유보됩니다.